

입시공정관리위원회규정

제정 : 1995.03.01
개정 : 1998.03.01
개정 : 1999.03.01
개정 : 2001.03.01
개정 : 2002.03.01
개정 : 2003.03.01
개정 : 2004.04.22
개정 : 2005.04.01
개정 : 2006.03.01
개정 : 2011.03.01
개정 : 2014.07.01
개정 : 2018.03.01
개정 : 2021.12.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5조에 의거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기구로서 입시공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총장 직속기구로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0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총장이 임명하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07. 01.>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03. 01.>

제3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가진다. <개정 2021. 12. 01.>

1. 대원대학교의 입시 부정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2. 01.>
2. 입시의 주요 과정 확인 감독에 관한 사항
3. 입학전형의 공정관리 감사에 관한 사항
4. 기타 입학의 공정관리를 위한 주요 사항

제5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14. 07. 01.>

제6조(활동) 공정관리 감사 활동은 위원장의 주관하에 입학전형기간 중에 실시한다.

제7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결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4년 4월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